

호주 딸기 시장 조사

I 호주 시장 동향

1. 국가개요

- 수도 : 캔버라
- 면적 : 786만km² (한반도의 35배)
- 인구 : 약 2,413만 명(2016년 기준)
- 종교 : 기독교(73%), 무교(25%), 기타(2%)
- 민족 : 앵글로색슨(80%), 유럽계(11%), 아시아계(7%), 원주민(애보리진) 및 기타(2%)
- GDP : 약 1조 2046억 달러 / 1인당 GDP : 49,928 달러(2016년 기준)
- 무역규모 : 수출액 1,925억 달러 / 수입액 1,893억 달러(2016년 기준)

* 자료 : World Bank, GTA(Global Trade Atlas)

2. 농업현황

- 농식품 수출액 : 31,224백만 달러 / 수입액 : 15,662백만 달러(2016년 기준)
- 농업 총생산액 : 약 55,994백만 달러(2016년 6월 기준)
- 농림수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2.4%(2016년 기준)
- 농림수산업 고용인구 : 전체 고용인구의 약 2.7%(2016년 기준)
- 농촌인구 : 약 2,520천 명, 전체 인구의 약 10.4%(2016년 기준)
- 농경지 면적 : 약 371백만 ha(2016년 6월 기준)
- 호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로는 소고기, 밀, 우유, 채소, 과일, 양고기, 양모 등이며 이 품목들이 호주 농업 총생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는 밀, 소고기, 양모, 낙농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호주 농산물의 약 60%가 매년 해외로 수출됨. 주요 수출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임
- 호주의 주요 수입품목은 궤련, 베이커리제품, 주류 등이며 주로 중국, EU, 미국, 태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자료 : World Bank, GTA(Global Trade Atlas),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제무역기구(WTO)

3. 농식품 유통현황

□ 유통채널 현황

- 2015년 호주 식품유통시장 총 매출액은 118십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인구에 비해 국토가 넓어 전국 유통채널망 구축이 어려운 관계로 호주 내 4개 대형 유통업체가 식품유통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 유통채널별 유통점유율(2015년 기준)

(단위 : %)

구 분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식음료 전문점	온라인채널	기타	합계
점유율	70.0	14.8	14.0	0.5	0.7	100

* 자료 : Global Data, Food 기준

- 호주 NAB은행에 따르면 2015년 호주 온라인시장 규모는 166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9% 성장했음. 또한 마케팅 리서치 업체 IBIS Worl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2015년 호주 온라인시장 연평균 증가율은 약 14.6%로 조사되었음
 - 온라인시장에서 식음료품목 소비는 약 15%를 기록해 점유율 상위 5품목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 Woolworths, Coles 등 호주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대형 유통채널들도 온라인 유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유통채널 순위와 매출액(2016년 11월 기준)

(단위 : 십억 달러, %)

업체명	매출액	점유율
Woolworths Group	32.6	36.3
Coles Group	29.8	33.2
Aldi	11.2	12.5
IGA(Metcash)	8.8	9.8
기타	7.3	8.1

* 자료 : Roy Morgan Research

4. 한국 농식품 수출입 현황

☐ 최근 3개년 수출입 동향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1.1 ~ 6.3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 출	47,552	165,019	48,999	169,333	23,695	87,423
수 입	5,202,839	2,493,152	5,505,825	2,650,683	2,959,821	1,494,157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AG코드 기준)

☐ 최근 3개년 수출 상위 5품목

(단위 : 천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1.1 ~ 6.30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위	귤련	57,290	귤련	51,761	귤련	25,223
2 위	라면	11,774	라면	12,843	라면	8,336
3 위	김	6,223	혼합조제식료품	10,130	혼합조제식료품	4,022
4 위	가배아프제품	5,595	가배아프제품	8,262	커피조제품	3,995
5 위	젤라틴	5,203	곡류조제품	5,954	가배아프제품	3,869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AG코드 기준)

5. 농식품 소비현황

- 호주 비건푸드 시장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으로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4번째로 큰 비건푸드 시장임
 - Euromonitor에 따르면, 호주의 포장 비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약 153백만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까지 약 21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호주 소비자들은 유기농, 글루텐프리 등 건강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함. 따라서 원산지과 라벨링을 꼼꼼하게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호주의 웰빙식품 시장은 2015년에 비해 2.9% 성장한 16,429백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웰빙식품 카테고리 중 2015년에 비해 가장 크게 성장한 품목은 Free From식품(알레젠, 유제품, 글루텐, 락토스, 육류의 첨가를 배제한 식품)과 유기농 식품임. 각각 2016년 기준 매출액 5,110백만 달러, 763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8.9%, 5.4%의 성장률을 보였음
- 2016년 기준 호주에서 많이 소비하는 한국식품으로는 과자류, 라면류, 소스류, 빵류, 김 등이 있음
 - 한류 영향으로 호주인들이 한국 드라마 등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음. 이에 현재 호주 대형 유통업체인 Woolworths에서는 한국산 불고기 양념, 김치, 볶음밥 소스 등을 판매하고 있음

* 자료 : 주호주한국대사관 가공식품 시장 동향 보고서 2016

II

딸기 시장 동향

1. 딸기 품목정보 및 시장개요

□ 딸기 품목 정보

○ 명칭 : 딸기 / Strawberry(영문)

○ HS코드 및 수입관세

HS코드		품 목	수입관세
호주	한국		
0810.10.00	0810.10.0000	딸 기	0%(KAFTA 관세율)

□ 딸기 시장 개요

- 2017년 9월 호주와의 딸기 검역협정이 타결되어 빠르면 ‘17년 12월 호주로 딸기 수출이 가능함
 - 기존에는 검역협상이 이루어진 중국과 식품표준이 같은 뉴질랜드만 호주로 딸기를 수출할 수 있었음
- 호주의 딸기 시장은 2013년 4.6억 A\$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대부분은 호주산 딸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호주인들은 딸기 소비에 1회 평균 4.37A\$를 지불하였으며, 평균 366g을 구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평균 소비량은 3.01kg)

2. 딸기 생산동향

- 호주에서 딸기는 2013년 연간 69,363톤이 생산 되었으며 이 중 수출로 793톤, 제조용으로 11,876톤이 소비 되었고, 소매 유통망으로 45,678톤이 판매되었음
- 딸기는 지역별 생산 시기가 다르며, 이로 인해 연중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딸기의 주 생산지는 퀸즈랜드와 빅토리아 주로 호주 전체 딸기 생산량의 77%를(서호주 11%, 남호주 7%, 테즈매니아 4%, 뉴사우스웨일즈 1%)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호주 국내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음.

<호주의 딸기 재배 지역과 재배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QLD												
WA												
VC												
SA												
TAS												
NSW												

- 호주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경우 노지 딸기가 대부분이라 한국의 하우스 딸기에 비해 당도가 떨어지며, 당도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임

3. 딸기 수입동향

- 호주 전체 딸기 수입액은 12.5천불(1.1톤)로 중국산 딸기가 전체 수입액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 16년 기준 호주 딸기 수출 물량 3,779 톤과 호주 전체 딸기 생산량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제조용으로 소비

<호주 딸기 수입실적>

(단위 : \$, 톤)

구 분	2014		2015		2016		단가/ kg	전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7,950	162,500	12,500	11,979	1,100	12,529	11.39	4.6
중국	24,640	35,440	12,500	11,979	1,100	12,529	11.39	4.6
뉴질랜드	23,310	127,060	0	0	0	0	-	-

* 출처 : Global Trade Atlas

4. 딸기 수출동향

- 호주 전체 딸기 수출액은 23.8백만불로 싱가포르가 전체 수출액의 약 23.9%(5.7백만불)를 차지하고 있으며, UAE 4.7백만불, 뉴질랜드 3.6백만불, 태국 2.7백만불 순으로 딸기를 수출하고 있음

<호주 딸기 수출실적>

(단위:천\$, 톤)

구 분	2014		2015		2016		단가 /kg	전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958	11,320	2,880	17,969	3,779	23,883	6.32	32.9
싱가포르	579	2,910	756	4,652	974	5,702	5.85	22.6
UAE	367	1,677	577	3,689	741	4,750	6.41	28.8
뉴질랜드	363	2,564	475	2,568	554	3,606	6.50	40.4
태국	134	861	223	1,482	415	2,690	6.48	81.5
홍콩	159	1,126	162	1,055	337	2,018	5.97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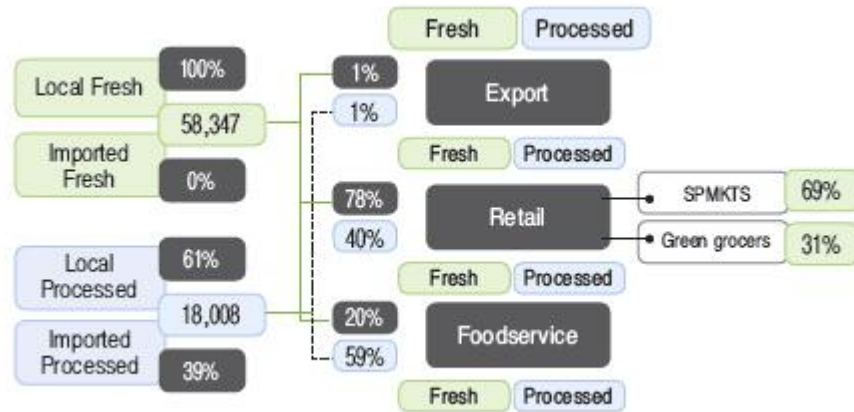
* 출처 : Global Trade Atlas

II

유통 및 소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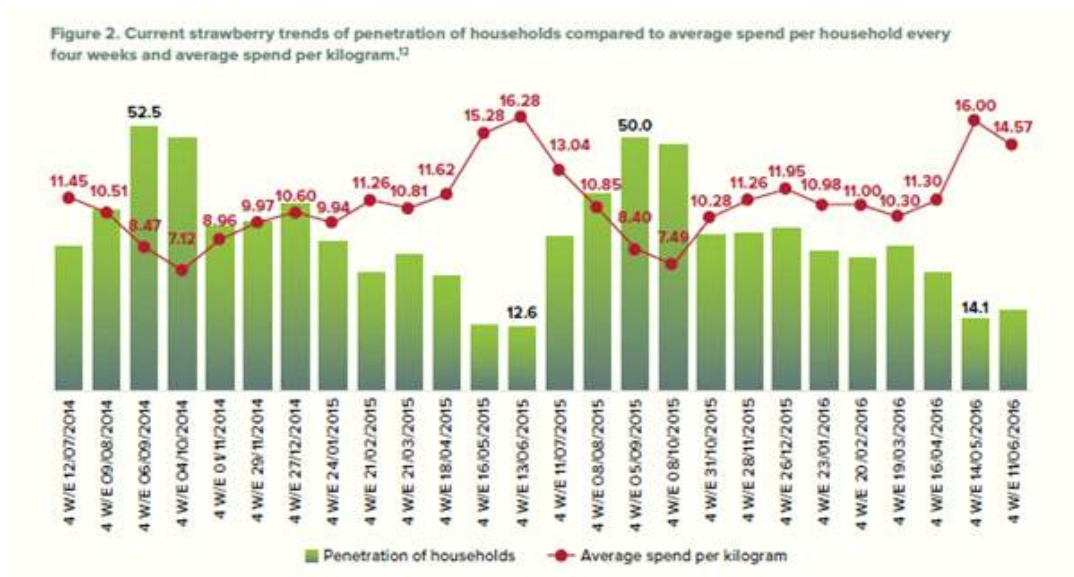
1. 딸기 유통현황

□ 딸기 유통구조



- 현지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일반적으로 250g 포장 패키지로 대형유통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되고 있는 거의 모든 딸기는 현지 생산 딸기임

<연간 호주 딸기 kg당 가격>



- 딸기는 지역별 생산 시기가 다르며, 이로 인해 연중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지역인 퀸즈랜드와 빅토리아 수확시기인 9, 10월에 가격이 가장 저렴함

□ 현지 딸기 유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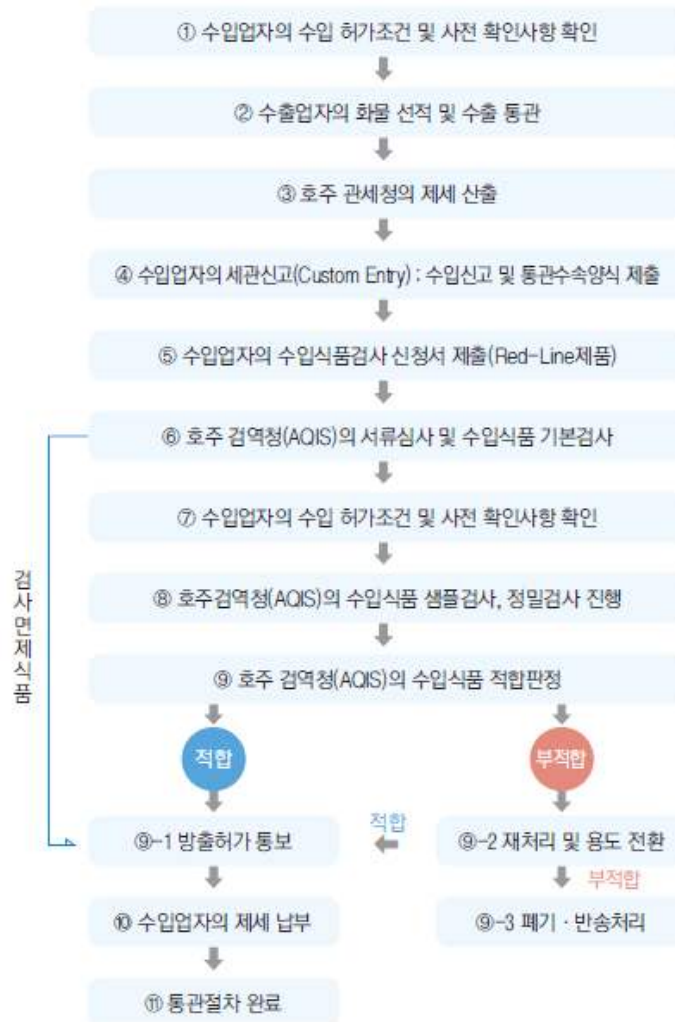
제 품	가격	무게	유통매장	원산지
	AUD 3.5 (약 2,873원)	250g	Woolworths	호주
	AUD 3.5 (약 2,873원)	250g	Coles	호주
	AUD 4.0 (약 3,283원)	500g	Woolworths	칠레

2. 딸기 소비동향

- 호주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딸기는 현지 생산 딸기로 중국, 뉴질랜드에서 극히 미미한 량이 수입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제조용으로 활용
- 현지 신선과실 수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산 딸기는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의 모양도 고르지 않아 한국산 딸기에 비해 품질이 많이 떨어짐

1. 일반 수입통관 과정

<호주 수입 통관 절차>



1) 수입 허가조건 및 사전 확인사항 확인

○ Import Permit(수입허가증) 필요여부 확인

○ Import Condition(수입 허가조건) 확인

- BICO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의 Import Condition Search를 통해 알 수 있음
- Import Conditions들 중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들은 BICON Alerts을 통해 알 수 있음

○ Imported Food Notice(수입식품고시) 확인

- 수입업자가 수입절차에 돌입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① 수입 식품에 적용되는 검사 안내
 - ② BES인증 및 해외정부 인증서 안내
 - ③ 일반 안내
- 수입업자는 수입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호주 관세청 및 호주 검역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에 제출
- 수입허가증 신청은 수입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며, 발급시간은 신청 후 약 2~3주 소요됨.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수입허가번호(Import Permit Number)를 부여받게 되는데, 제품이 선착(Landing)하기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수산물이나 축산물 등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며, 품목에 따라 신청서 작성 내용과 필요 서류가 다름

2) 화물 선적 및 수출 통관

○ 수출자는 호주에 수입될 화물의 선적을 위한 수출통관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함. 대부분은 관세사나 운송사의 대행으로 제출

- ① 선적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리스트(Packing List)
- ② 통관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원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리스트(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untry of Origin)
- ③ 수입자는 통관 및 선적서류와 선박 도착일시를 통보 받음

3) 제세 산출

- 관세 산출 : FOB조건 인도가격 × 관세율
- 한-호주 FTA 체결 이후 농식품에 대한 관세율은 0%임
- 부가가치세(GST; Good and Sercixe Tax)
 - 관세 부과후의 금액 × 10%

○ 이외 품목에 따라 추가 세금이 있을 수 있음

(ex. Wine Equalisation Tax, 각종 주류에 붙는 추가 세금 등)

○ 그 이외 Overseas/Air Freight, B.S.R.A & D/O/ ITF & IDF, Custom Computer Terminal 사용료, Owner Code Application Fee, Supplier Code Application Fee를 지불해야 함

○ Custom Agents Fee/Professional Attendance Fee, Cartage to warehouse Fee(필요시), Unpacking Fee(필요시), Cartage의 Service charge는 1주일 내에 지불 하면 됨

○ 검역소 등 수입기관은 수입자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절차는 바이어 및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고 타당하다고 권장

4) 세관 신고(Custom Entry) : 수입신고 및 통관수속양식 제출

○ 수입제품이 호주로 입항하기 48~72시간 전에 관세청이나 관세사를 통해 통관수속양식을 제출해야 함

○ 수입제품이 1,000 A\$ 이하인 경우

- 제품이 항공/선박으로 운송된 경우에만 자가 신고서(SAC : Self-Assessment Clearances)를 전자 무역자동화 시스템에 제출. 상업적인 목적을 갖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제품은 GST가 적용되지 않음

○ 수입제품이 1,000 A\$ 이상인 경우

- 통관수속양식(FDIs; Formal Import Declarations)을 호주 관세청(AIQS)의 전자무역자동화시스템(ICS; Integrated Cargo System)을 통해 제출하거나, 호주의 지역 관세청에 서면으로 제출

①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된 식품을 위해 제출할 기본서류

- 무역서류 : 선하증권(B/L), 송장(Invoice),포장리스트(Packing List)
- 제품관련 서류 : 제조공정표(Manufacturer's Declaration), 수출자 등록증(Exporter's Declaration),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Cover Sheet13)에 수입허가 번호를 기입)
- 수입식품 서류 : Lot Code List

② 통합수속양식(FID)작성에 필요한 정보

- 수입업자는 수입수속양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항인 관세 코드, 원산지, 공급자 등의 정보를 식품의 분류에 따라 기재

③ 수입허가조건을 준용하지 않는 제품은 재수출, 폐기, 재처리가 가능하고 폐기 이외에 드는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으로 처리

④ 수입신고등록 질문

- 호주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신고 등록 질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질문을 통해 문서상으로 등록된 수입수속 양식의 정보와 비교하여 해당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지 여부와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 관세코드와 등록 자료만으로는 식품의 위험여부를 판단하여 위험 식품 여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식품에 관련된 재료나 혼합, 가공에 쓰인 공정 등의 수입식품신고체계 등록 질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아냄

5) 호주 관세청의 세관검사 : 수입식품 분류

- 호주 관세청에서는 식품기준규격과 COMPILE 시스템 정보를 참고하여 수입식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검역청(AQIS)에 해당 제품의 검역절차를 요청
- 수입식품은 식품기준 규격의 준수여부와 공공의 건강이나 안정에 미치는 위험성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식품 관리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감시식품 : 인간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낮은 제품
 - 위험식품 : 인간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중간 또는 높은 제품
- 위의 분류에 따라 각 제품의 검역검사가 진행되는데, 위험 식품은 제품의 100%, 감시식품은 수입된 제품 중 5%가 무작위로 선정되어 검역검사 대상이 됨

6) 호주 검역청(AQIS)의 서류심사 및 수입식품 기본검사

- 수입식품검사는 수입식품검사체계(IFIS)에 따라 실시된다. 수입식품검사 체계는 식품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모든 수입식품은 식품기준청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제품은 부두에서 지정 검역장소로 옮겨진 후 검역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때 검역장소는 호주 관세청에 공식 등록된 장소이어야 함
- 식품분류에 따른 검역절차가 호주 검역청에 통보되면 검사관은 검역청 검사관리 시스템(AIMS, AQIS Impor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전달받은 수입신고 서류 및 검역 지시사항을 토대로 기본검사를 실시. 검사는 서류를 기본으로 육안검사와 식품표시(라벨링)검사가 진행됨
- 육안검사와 식품표시(라벨링)검사란, 제품포장을 열고 식품의 오염 여부와 포장 결함 등 식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사하는 것이며, 조사관들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품표시(라벨) 및 표시가 영문으로 되어있는지의 여부
 - 무역에 대한 설명(Trade Description)이 정확한지의 여부
 - 제조자 및 수입자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 원산지 표시 여부
 - Batch/Lot 코드 표시 여부
 - 날짜 표시(형식에 맞게) 여부
 - 순 중량, 내용물 표시 여부
 - 성분 표시 여부(해당되는 경우)
- 기본검사의 결과 및 추가검사(샘플링 및 정밀검사) 필요여부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통보됨. 만약 무역자동화 시스템(ICS)로 접속 및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식품관리증명서(FCC ; Food Control Certification)발급을 통해 다음의 경우를 통보
 - 검사가 필요 없는 제품 방출
 - 샘플링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 장소로 이송
- 별도의 검사과정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은 Green Line으로 구분되어 방출이 통보되며, 세부 검사를 요하는 Red Line으로 구분된다. 그 외 식품관리 증명서의 지시에 따라 검사 면제 식품에 대해서는 무 검사 통지서가 발급
 - Red Line으로 분류된 품목들은 검사관이 세부 검사를 직접 실시하며, 검사관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품과 대조하여 심사

7) 수입식품검사신청서 제출

- 수입업자는 Red Line으로 분류된 샘플링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품목을 검역청(AQIS)에 수입식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신청

8) 호주 검역청(AQIS)의 수입식품 샘플검사, 정밀검사

- 검사관은 수입식품검사체계(IFIS :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에 따라 수입 식품검사를 진행
- 수입식품검사체계(IFIS)는 식품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모든 수입 식품들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검사관은 감독 대상 식품의 경우는 표시사항검사, 시각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에 따라 샘플 분석검사를 실시하며, 모든 위험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검사, 시각검사, 샘플분석검사를 실시

가. 샘플검사

- 샘플검사는 실제 운송된 제품과 보고된 제품의 동일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수거하여 확인하는 추가적인 검사임. 채취된 샘플은 검역청의 검사실로 보내짐

나. 감시식품의 검사

- 감시식품은 5%의 무작위 샘플 채취로 기본검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식품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보류명령(Holding Order)’으로 분류되어, 나머지 95%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됨. 해당제품은 검사 후 통관(Release after Inspection) 상태로 분류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샘플을 채취하도록 함. 만약 정밀검사에 의해 부적합판명이 난 경우, 수입자의 의사에 따라 폐기 등으로 처리되고, 해당 비용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

다. 위험식품의 검사

- 위험식품의 샘플검사시, 모든 제품이 100% 검사 대상이 됨.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제품은 ‘검사 중 보류(Test and Hold)’ 상태로 분류되고, 해당 제품은 시중에 판매될 수 없음.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수입자의 의사에 따라 용도전환, 폐기 등으로 처리됨

- 수입식품의 기본검사 및 샘플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 필요여부가 결정되고, 정밀검사는 대부분 「지정 검사기관 제도」에 의해 진행됨

9) 호주검역청(AQIS)의 수입식품 적합판정

- 호주 검역청(AIQS)은 검사결과에 대해 수입식품검사보고서(IFIR ; Imported Food Inspection Report)를 발급하고, 호주 검역청 수입관리전산시스템(AIMS)에 세부사항을 입력. 검사보고서는 호주 관세청에 통보되어, 결과에 따라 통관절차를 밟도록 함. 검사 결과는 수입자에게 통보되는데, 폐기 처분 이외의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이 됨

가. 적합판정 - 통관 허가

- 수입식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수입관리전산시스템(AIMS)을 통해 방출허가증이 호주관세청에 통보되어 통관절차를 진행

나. 부적합 판정 - 재처리 및 용도전환

- 수입식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재처리(예, 라벨 수정 후 재부착 등) 및 용도전환을 허가 하며, 재통관 절차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방출이 허가됨

다. 부적합 판정 - 폐기 및 반송처리

- 수입업자의 재처리 및 용도전환에 대한 요청이 없거나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폐기 및 반송처리 됨

○ 검역검사결과에 따는 참고사항

- 검역검사 결과 통보 후, 수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검역청에서 폐기처분할 수 있음
- 호주검역청에서는 수입식품검사보고서(IFIR)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부적합 판정 제품에 관한 분석결과를 공지하고 국외 수출자 및 국내 수입자들이 수출입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적합 판정 제품결과의 포함내용
 - 부적합 검사 날짜, 제품 상세내역, 수출국, 생산자 번호, 부적합 유형, 부적합 원인, 해당 식품기준규격 번호

10) 제세부과

- 수입자는 검역검사결과에 따른 수입통관절차의 비용을 지불

11) 통관절차 완료

2. 검역 / 통관 제도

□ 수입검사제도

-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품목은 반드시 호주 검역청에서 관리하는 검역과 식품기준 준수여부를 충족해야 함
- 검역(Quarantine)
 - 검역 대상은 동식물,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식물 등 자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호주에 수입되기 전(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 식품의 수입통관은 호주검역당국(AQIS)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 검사체계(IFIS)에 따라 조정됨.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음식은 우선적으로 검역검사와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의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함
 - 해당 식품의 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출시를 허가받기 위해 호주 검역 당국에 방문해야 하며, 위험 카테고리의 식품의 호주 반입 여부의 기준은 생산자의 과거 기록에 기초하여 검사받을 필요가 있음
 - 수입식품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규격위원회(ANZFS)의 요구조건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는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음
 - 호주 정부의 검역법(Quarantine Act 1908)은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호주 정부는 다음 제품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제제하고 있음
 - 달걀과 달걀제품 ○ 유제품 ○ 신선육류
 - 씨앗이나 견과류 ○ 신선과일과 야채
 - 육류, 우유 및 달걀을 포함하는 제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제품 수입 전 수입허가증(Import Permit)발급이 필요

□ 호주의 식품수입 제한, 금지 제도

- 호주정부는 특정한 지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호주의 자연환경, 사람, 동식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별, 지역별 식품품목별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수입업자가 호주로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이 수입금지 품목이더라도 만약 그 식품품목을 재배, 생산하는데 대한 호주와 상대국간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 식품이 호주로 수입이 가능함
- 신선과채류 이외의 우리나라 식품류는 대부분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호주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AQIS의 엄격한 검역검사절차를 밟아야 함
- 식품수입 금지제도
 - 호주정부의 식품수입제도에 의해 수입되는 식품 중 병충해를 가지고 있는 식품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호주의 AQIS에 의한 병충해 유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신선 과채류 및 그 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식품류는 수입허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호주검역청(AQIS)의 위해 관리분석(RMA : Risk Management Analysis)을 받아야 함
 - 다음은 주요 품목별 금지여부임
 - 사과 :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검역조건(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 미국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계란 수입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 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3. 한국산 딸기 호주 수출검역 요령

□ 적용대상 :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호주로 수출되는 식용 딸기 (*Fragaria* × *ananassa*) 생과실

□ 호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매년 수출농가(온실에 한함) 목록에 등록하여야 함

○ 수출 선과장의 요건

- ① 딸기 생과실을 선별할 수 있는 선과시설이 있어야 하며, 선과되지 않은 과실과 선과된 과실이 구분·격리되어 보관되어야 함
- ② 내수용, 호주 수출용 또는 호주 이외의 타국가 수출용 딸기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확보되고, 각 시설 내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야 함
- ③ 별도의 수출검역 장소가 확보되고, 수출검역 장소에는 조명시설이 포함된 검사대가 구비되어야 함
- ④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이 이루어져야 함

□ 한국산 딸기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의 목록

- ① 대만총채벌레 (*Eurasia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intonsa*)
- ② 꽃노랑총채벌레 (*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 ③ 차응애 (*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 ④ 뱃초파리 (*Spotted wing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 ⑤ 딸기모무늬병 (*Angular leaf spot, Xanthomonas fragariae*)